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. 3. 17 선고 2020가단1721 판결 [토지인도(건물철거)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변론 종결2021. 2. 24.

판결 선고2021. 3. 17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충남 예산군 G 대 337m²에 있는 별지 개황도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34.64m² 부분 주택 및 창고, 담장을 철거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충남 예산군 G 대 337㎡의 소유자이고, H은 위 토지 위에 있는 별지 개황도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34.64㎡ 부분 주택 및 창고, 담장의 소유자였다. 그런데 위 H이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들로는 피고들이 있다.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위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34.64㎡ 부분 주택 및 창고, 담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김주완

별지